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·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‘보고’하도록 하던 것을 ‘통보’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